

# 정 관

대한유화주식회사

# 목 차

## 제1장 총 칙

제1조 : (상호) .....	5
제2조 : (목적) .....	5
제3조 :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5
제4조 : (공고방법) .....	5

## 제2장 주 식

제5조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6
제6조 : (壹주의 금액) .....	6
제7조 : (설립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	6
제8조 : (주식의 종류) .....	6
제8조의 2 :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6
제9조 :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	7
제10조 : (신주인수권) .....	7
제10조의 2 : (주식매수선택권) .....	8
제10조의 3 : (신주의 배당기산일) .....	10
제11조 : (명의개서대리인) .....	10
제12조 : (주주명부 작성·비치) .....	10
제13조 : (기준일) .....	11

### 제3장 사 채

제14조 : (전환사채의 발행) .....	12
제15조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13
제15조의 2 :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 등록) .....	13
제16조 :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	14

### 제4장 주주총회

제17조 : (소집시기) .....	15
제18조 : (소집권자) .....	15
제19조 : (소집통지 및 공고) .....	15
제20조 : (소집지) .....	15
제21조 : (의장) .....	15
제22조 : (의장의 질서유지권) .....	16
제23조 : (주주의 의결권) .....	16
제24조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	16
제25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16
제26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16
제27조 : (주주총회의 결의 방법) .....	16
제28조 : (주주총회의 의사록) .....	17

## 제5장 이사·이사회

제29조 : (이사의 수) .....	18
제30조 : (이사의 선임) .....	18
제30조의 2 :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	18
제31조 : (이사의 임기) .....	19
제32조 : (이사의 보선) .....	19
제33조 : (대표이사 등의 선임) .....	19
제34조 : (이사의 직무) .....	19
제34조의 2 : (이사의 보고의무) .....	19
제35조 : (삭제) .....	19
제36조 : (삭제) .....	19
제36조의 2 :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19
제37조 : (이사회 구성과 소집) .....	20
제38조 : (이사회 결의방법) .....	20
제39조 : (이사회 의사록) .....	21
제39조의 2 : (위원회) .....	21
제40조 :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21
제41조 : (자문역 및 고문) .....	21

## 제6장 감사위원회

제41조의 2 : (감사위원회의 구성) .....	22
제41조의 3 :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23
제41조의 4 : (감사록) .....	23

## 제7장 계 산

제42조 : (사업년도) .....	25
제43조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	25
제43조의 2 : (외부감사인의 선임) .....	26
제44조 : (이익금의 처분) .....	26
제45조 : (이익배당) .....	26
제45조의 2 : (분기배당) .....	27
제46조 :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7
부 칙 .....	29
정관변경내용 .....	32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상호)

이 회사는 대한유화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 PETROCHEMICAL IND. CO., LTD. 라 표기한다.

## 제 2 조 :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나프타 및 석유류를 원료로 하는 에틸렌 등 올레핀류, 혼합C4류, 분해가솔린 및 방향족류와 그 유도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
- ② 상기 올레핀류 등을 원료로 하는 폴리프로필렌, 고밀도폴리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사업
- ③ 전 각호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화학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사업
- ④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 전기 및 증기, 기타 유틸리티의 생산판매업
- ⑤ 무역업 (전 각호 관련 원료, 제품 및 기자재)
- ⑥ 부동산 및 시설물 임대업
- ⑦ 전 각호에 관련하는 일체 부대사업 또는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 제 3 조 :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공장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pic.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 제 5 조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六阡萬주로 한다.

### 제 6 조 : (壹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壹주의 금액은 金五阡원으로 한다.

### 제 7 조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壹萬주로 한다.

### 제 8 조 : (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 8 조의 2 :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9 조 :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0 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

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기술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장단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의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조 제1호에서 제4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일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제10조의 2 :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

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로 정한다.

-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  
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  
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  
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

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0조의 3 :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 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조 : (명의개서대리인)**

-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 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2조 : (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

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 13조 : (기준일)**

① (삭 제)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 14조 : (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액면 총액이 壹仟億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 청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조 :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액면 총액이 壹仟億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회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조의 2 :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조 : (사채 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17조 : (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 18조 : (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조 : (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서울경제신문”과 “서울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제 20조 :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조 : (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 (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을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 (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이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제29조 : (이사의 수)

-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8명 이내로 한다. 독립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삭 제)
- ③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④ 이 회사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30조 : (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의 2 :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 ①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독립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 : (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 ② (삭 제)

**제32조 : (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 : (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각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 : (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며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 2 :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 (삭 제)**

**제36조 : (삭 제)**

**제36조의2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의 경우

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 (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 의 의장은 이사회 의 결의 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 한다.
- ③ 의장 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 에서 정한 순서 또는 이사회 에서 별도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 ④ 이사회 는 의장 이 소집 하며 의장 은 회일 壹 일전 에 각 이사 에게 통지 하여 소집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 의 동의 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 ⑤ 각 이사 는 업무 수행 상 필요 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의장 의 동의 를 얻어 이사회 를 소집 할 수 있다. 이때 에도 전항 의 규정 을 준용 한다.

**제38조 : (이사회 의 결의 방법)**

- ① 이사회 의 결의 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이사 과반수 로써 결의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 에 대한 이사회 결의 는 이사 3분의 2 이상 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 는 이사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직접 회의 에 출석 하지 아니하 고 모든 이사 가 음성 을 동시 에 송·수신 하는 통신 수단 에 의하여 결의 에 참가 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 는 이사회 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
- ③ (삭 제)
- ④ 이사회 의 결의 에 관하여 특별 한 이해 관계 가 있는 자 는 의결 권을 행사 하지 못 한다.

**제39조 : (이사회 의 의사록)**

-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의2 : (위원회)**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기타 회사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 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에 의한다. 독립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1조 : (자문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자문역 및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감사위원회

### 제41조의 2 : (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삭제)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⑨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의 3 : (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조의 4 :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

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7 장 계 산

### 제42조 :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3조 :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차대조표
  - 2)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 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 ⑤ 제4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⑦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4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 2 :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 ① 이익준비금
- ② 기타의 법정적립금
- ③ 배당금
- ④ 임의적립금
- ⑤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5조 : (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 2 : (분기배당)**

-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용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 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6조 : (배당금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1990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1993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199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0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관련법규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정관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30조의2, 제36조의2,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2(제4항 및 제7항은 제외)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 개정규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의2 제7항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정 관 변 경 내 용

변경일자	변경조항	변 경 내 용
70. 6. 2	정 관 작 성	회사가 발행할 주식수 : 20,000주
70. 6. 4	제 1조 변경	상호변경 :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로
70. 12. 11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90,000주
71. 3. 2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10,000주
71. 3. 13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30,000주
71. 6. 7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90,000주
71. 6. 22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86,140주
71. 8. 18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86,140주
71. 8. 27	제 4조 변경	회사의 존립기간을 50년으로
71. 10. 26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67,070주
71. 12. 10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867,070주
71. 12. 23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116,000주
74. 2. 15	제30조 변경	사업년도변경 : 7. 1 ~ 6. 30
74. 8. 13	제24조 변경	이사와 감사의 상여금 및 퇴직금의 지급은 따로 정한 규정
74. 12. 11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36,110주
76. 8. 20	제30조 변경	사업년도 변경 : 1. 1 ~ 12. 31
78. 2. 24		1. 전면개정(제37조까지를 제40조까지로)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6,000,000주
79. 2. 23	제27조 변경	단 상여금 및 퇴직금을 단 퇴직금으로
80. 2. 23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6,000,000주
80. 10. 10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32,400,000주
80. 10. 27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40,000,000주
81. 2. 27	제 5조 변경	서울경제신문을 한국경제신문으로
82. 8. 16	제 6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0,000,000주
83. 12. 29	제 9조 변경	주식 및 주권의 종류(8종에서 9종으로 : 100,000주권을 추가)

변경일자	변경조항	변 경 내 용
85. 2. 27	제 6,7,18,25, 28,29,30,37, 38,조 변경	1, 1주금 500원을 5,000원으로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800,000주 3, 기타는 개정상법에 의해 개정
87. 2. 26	제22,24조 변경	1. 단서조항추가 2. 임원수 변경 : ②사장, 부사장2인, 전무2인 및 상무 약 간명을 사장1인, 부사장, 전무 및 약간명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조항 분리
89. 2. 23	제25,26조 변경	
90. 3. 23	전 면 개 정	1, 제40조까지를 제47조까지로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20,000,000주
93. 8. 6	제5조 변경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5,000,000주
95. 3. 13	제5조 변경	서울지방법원 사건 93파4105. 회사 정리계획에 의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7,615,954주
99. 7. 27	제11조의2 신설 제15,16조 변경	1. 신주의 배당 기산일 명시 2. 변경조문⑤항 단서 삭제
00. 3. 16	전 면 개 정	1. 제47조까지를 제46조까지로 (상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거 조항 전면개정 및 신설) 2.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 60,000,000주
09. 3. 20	전 면 개 정	1.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43조의2 (증권거래법 폐지에 의거 전면개정)
10. 3. 19	제4,10,11,43조 의2 변경 제44조의2,45 조의2 신설	1. 공고 방법 변경(회사 홈페이지 등기) 2.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변경 3. 주식의 소각, 분기배당 신설

변경일자	변경조항	변 경 내 용
13. 3. 15	전 면 개 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면 신설(제36조의2)</li> <li>2.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제43조)</li> <li>3. 이사의 임기:3년내의 최종 정기주총 종결시까지</li> <li>4. 제44조의2(주식의 소각) 삭제</li> </ol>
15. 3. 13	제1조 변경	상호변경 : 대한유화주식회사로 변경
22. 3. 18	전 면 개 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규모상장회사 제도 적용(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43조)</li> <li>2. 전자증권법 반영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2, 제16조)</li> <li>3. 이사회 양성평등 근거 신설 (제29조)</li> <li>4. 감사위원 분리선임 도입 (제41조의2)</li> <li>5. 전자투표 채택시 감사위원 결의요건 완화 (제41조의2)</li> <li>6. 외부감사인 선정권 변경 반영 (제43조의2)</li> <li>7. 상법 및 표준정관 반영 (제10조의2, 제13조, 제17조, 제29조)</li> <li>8. 직책 문구 수정 (제33조, 제34조, 제41조)</li> <li>9. 조항 숫자 변경</li> </ol>
26. 3. 13	전 면 개 정	<p>상법개정 및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의거 조항 전면개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명칭변경 : 사외이사 → 독립이사 (제29조, 제30조의2, 제36조의2, 제39조의2, 제40조, 제41조의2)</li> <li>2.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도 배제 금지(제30조)</li> <li>3.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 상향 (제41조의 2)</li> <li>4. 감사위원 선임·해임시 의결권 제한 강화 (제41조의2)</li> <li>5. 배당절차 개선 (제45조)</li> </ol>